

# 캐나다 목재합법성 표준지침

목재합법성 인증서류				캐나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비고
목재이용법률 제19조의3제2항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 제3조				
제 1 호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벌채권(Harvesting Authorities) [각 Province 혹은 Territory 발급]	
제 2 호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FS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FSC, PEFC 인증서	
		나	PEF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 PEFC Canada, SFI, CSA 인증서	
		라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제 인증체계(ISO17065 체계에 따른 제3자 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 3 호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출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	

제 4 호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운영하는 「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발적동반자협약」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	-	
		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	- (원목만 해당) 수출허가서[연방정부]	첨부 1
		다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장(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명세서 등의 확인서류	-	
		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	
		마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아래서류 3종 모두 제출 시 입증서류로 인정('27.8.31까지 허용) ① 공신력 있는 캐나다 목재협회의 인증/서한(Sustainability Certificate/Letter) ② 수출업자의 사업자 등록증(Incorporation Certificate) ③ 합법수출 소명(Export Declaration on Timber Legality)	첨부 2~5

[첨부1. 수출허가서(연방정부)]



Foreign Affairs, Trade and  
Development Can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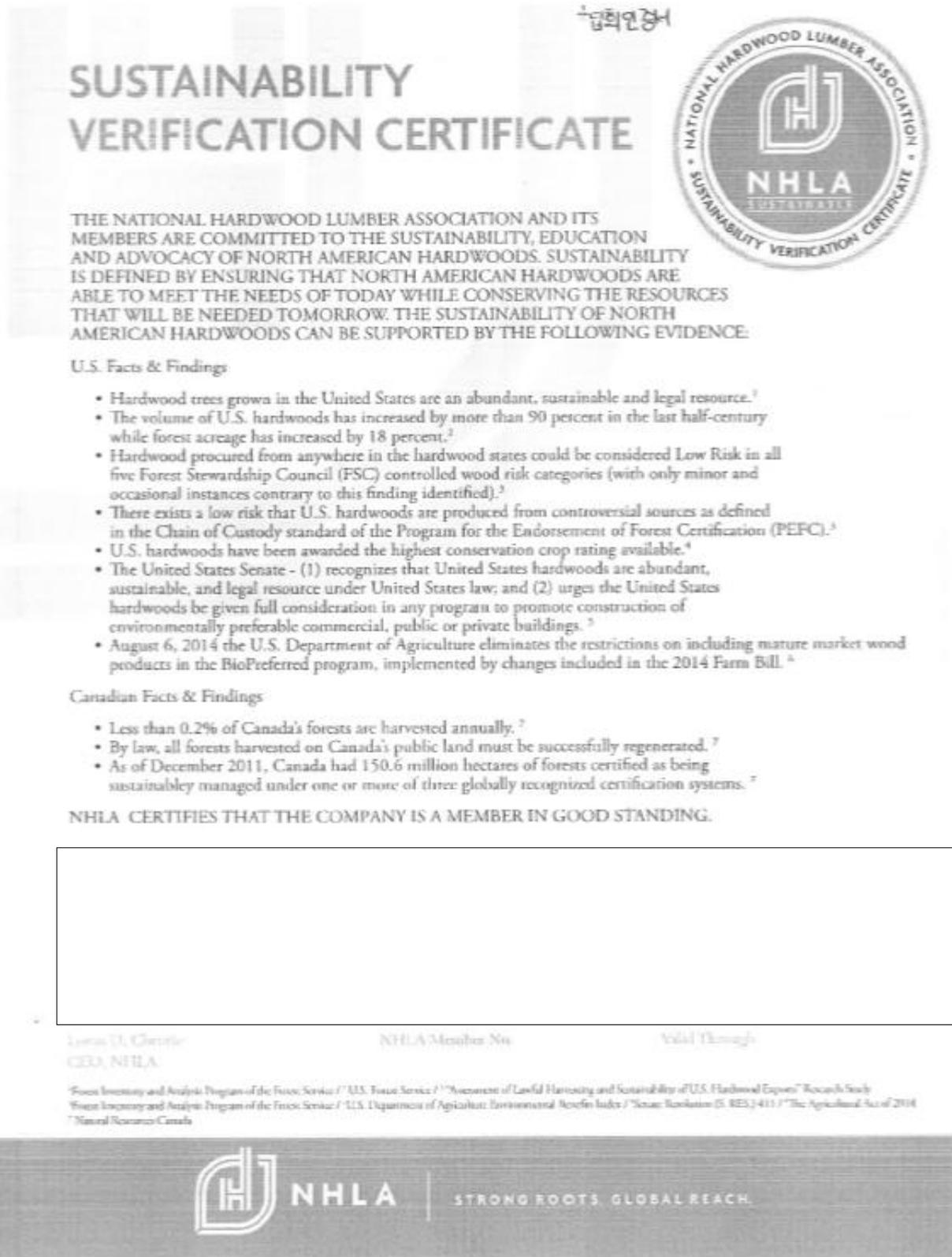
Affaires étrangères, Commerce  
et Développement Canada

**EXPORT PERMIT / LICENCE D'EXPORTATION**

Permit Number N° de licence:	Reference Identification N° de référence:	Permit Valid From Licence valide à partir du:	Permit Valid To Licence valide jusqu'au:	Page Number Nombre de pages:	
Exporter / Exportateur		EIPA No. / N° de LLEI:	Applicant / Requéant		
Name / Nom:		Name / Nom:			
Intermediary Consignee Name Nom du destinataire intermédiaire:		Street Address, City / Adresse de voirie, ville:		Country / Pays:	
Final Consignee Name Nom du destinataire final:		Street Address, City / Adresse de voirie, ville:		Country / Pays:	
ECL No. (s) N° de LMEC:					
Item No. N° d'article	Description	Quantity Quantité	Unit Measure Unité de mesure	Unit Value (\$CAD) Valeur unitaire (\$CAD)	Total Value (\$CAD) Valeur totale (\$CAD)
1					
The total value of all goods proposed for export against this permit is (\$CAD) : La valeur de toutes les marchandises autorisées à être exportées en vertu de cette licence s'élève à (\$CAD) :					
<b>Terms and Conditions / Conditions</b> 1 Any person or company exporting logs of all species from Canada must be in possession of this Permit before allowing logs to be loaded aboardship, towed to international waters or otherwise transported from Canada.					



[첨부2. ① 캐나다 목재협회 인증(예시)]



[첨부3. ① 캐나다 목재협회 서한(예시)]



January 3, 2020

To whom it may concern:

[Redacted] is a company that has been exporting hardwood lumber for over 50 years. They have been members of the Canadian and US hardwood lumber associations for decades. They have never had any issues around the sustainability of the products they export.

Undoubtedly, [Redacted] going to Incheon port, complies with proper forest management practices.

Thank you

*Signature*

Administrator  
Canadian Hardwood Bureau.

1390 Prince of Wales Drive, Suite 302, Ottawa, ON, K2C 3N6 Tel: 613-567-5511, Fax : 613-567-5411  
info@canadianhardwoodbureau.com

[첨부4. ② 수출업자의 사업자 등록증(예시)]

Request ID:  
Demande n° :  
Transaction ID:  
Transaction n° :  
Category ID:  
Catégorie :

Province of Ontario  
Province de l'Ontario  
Ministry of Government Services  
Ministère des Services gouvernementaux

Date Report Produced:  
Document produit le :  
Time Report Produced:  
Imprimé à :

## CERTIFICATE OF STATUS ATTESTATION DU STATUT JURIDIQUE

This is to certify that according to the records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Services

D'après les dossiers du Ministère des Services gouvernementaux, nous attestons que la société

Ontario Corporation Number

Numéro matricule de la société (Ontario)

is a corporation incorporated, amalgamated or continued under the laws of the Province of Ontario.

est une société constituée, prorogée ou née d'une fusion aux termes des lois de la Province de l'Ontario.

The corporation came into existence on

La société a été fondée le

and has not been dissolved.

et n'est pas dissoute.

Dated

Fait le

Director  
Directeur

The issuance of this certificate in electronic form is authorized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Services.

La délivrance du présent certificat sous forme électronique est autorisée par le Ministère des Services gouvernementaux.

[첨부5. ③ 합법수출 소명]

### Export Declaration on Timber Legality

■ Contractor(Buyer) :

Item	Unit	Quantity	Species	Country of Origin
<i>Sawn wood (HS 0000.00)</i>	<i>m<sup>3</sup></i>	<i>50.12</i>	<i>Hard Maple</i>	<i>Canada</i>

■ Forest Ownership(if harvested in Canada)

Land Type	Ownership	Location
<i>private</i>	<i>Company name</i>	<i>Address of the forest</i>

■ Supply Chain

Supplier	Company name	Address	Note
<i>logger</i>			
<i>sawmill</i>			
<i>factory</i>			

The above statement verifies the contract from *Month, Date, Year* to *Month, Date, Year*.

We confirm that the item is legally harvested and all the process of the suppliers above is done in the highest level of sustainability and forest management. Also, we agree to cooperate with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which requested a local investigation for assuring timber legality.

Date:

(Seller)

Address:

CompanyName:

Name:

(Signature)

(Representative)

Contact Number:

# 캐나다 목재합법성 관리체계

## [참고자료]

### 일반사항

- <캐나다>의 산림은 소유권에 따라 어떻게 구분(국유림, 사유림 등)됩니까?  
또한, 각 소유권별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캐나다 산림의 약 94%는 공유림이며, 나머지 6% 는 사유림입니다.

- <캐나다>의 산림은 어떤 형태(보호림, 경제림 등)로 구분됩니까?

전체 3억 4,700만 ha에 달하는 캐나다 산림 중, 2,400만 ha가 보호림, 약 2억 2,600만 ha가 경영림입니다. 연간 경영림의 벌채는 0.5% 미만입니다. (자료출처: 캐나다 산림부 2017 연간 보고서)<sup>1)</sup>

- <캐나다> 산림을 관리하는 부처 또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또한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업무 담당부서와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공유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입법 권한은 10개의 준주와 3개의 준주에 있습니다. 해당 입법 권한을 통해, 각 주 정부 및 준주 정부가 캐나다의 산림관리 절차를 규제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누나벗 (Nunavut) 준주의 경우 매우 적은 면적의 산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방 단위에는 벌채의 합법성을 보증하는 체계가 없으며, 각 주 또는 준 주가 관할 지역 내의 불법 목재 벌채를 다룹니다.

1) 온실가스 보고와 관련하여, 캐나다의 경영림은 전체 산림의 65%인 약 2억 2,600만 ha입니다. 기타 모든 산림은 비경영림으로 간주 됩니다. 경영림 수치는 매년 조정되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보고서와 일치합니다.

각 주 및 준주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British Columbia**

Deputy Minister

Ministry of Forests, Lands, Natural Resource Operations and Rural Development

Telephone: +1-250- 952-6500

### **Alberta**

Executive Director

Alberta Agriculture and Forestry, Forest Management Branch

9920 - 108 Street, Edmonton, Alberta T5K 2M4 Canada

Telephone: +1-780-427-5324

### **Saskatchewan**

Government of Saskatchewan

Forest Service Branch, Ministry of Environment

Box 3003, Prince Albert S6V 6G1 Canada

Email: skfs@gov.sk.ca

### **Manitoba**

Manager, Planning and Development

Forestry and Peatlands Branch

Manitoba Sustainable Development

200 Saulteaux Crescent, Winnipeg, Manitoba R3J 3W3 Canada

Telephone: +1-204 803-6639

## **Ontario**

Divisional Integration Co-ordinator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Forestry

Information Centre (NRIC)

300 Water Street, Peterborough, Ontario K9J 8M5 Canada

Telephone: +1-705-755-3188

## **Québec**

Director, Direction de la tarification et opérations financières

Bureau de mise en marché des bois

5700, 4e Avenue Ouest, bureau A-204, Québec, Québec G1H 6R1 Canada

Telephone: +1-418 627-8640, Ext. 4374

## **New Brunswick**

Forest Management (Branch), Department of Energy and Resource Development

Hugh John Flemming Forestry Centre

P. O. Box 6000, Fredericton, NB, E3B 5H1 Canada

Telephone: +1-506-453-3826

Email: [dnr\\_mrnweb@gnb.ca](mailto:dnr_mrnweb@gnb.ca)

## **Nova Scotia**

<https://novascotia.ca/natr/forestry/contact.asp>

## **Newfoundland**

Fisheries and Land Resources

Forestry Regional Services

Fortis Building

4 Herald Avenue, P.O. Box 2006, Corner Brook, Newfoundland A2H 6J8 Canada

Telephone: +1-709-637-2517

## **Prince Edward Island**

Forests, Fish and Wildlife Division

J. Frank Gaudet Tree Nursery

183 Upton Road, Box 2000, Charlottetown, Prince Edward Island C1A 7N8  
Canada

Telephone: +1-902-368-6450

## **Northwest Territories**

Forest Resources, Forest Management Division

Department of Environment & Natural Resources

Government of the Northwest Territories

Telephone: +1-867-874-8228

## **Yukon**

Director

Forest Management Branch, Sustainable Resources Division

Energy, Mines & Resources, Government of Yukon

Telephone: +1-867-456-3813 [www.forestry.gov.yk.ca](http://www.forestry.gov.yk.ca)

## 벌채 허가 관련 사항

- <캐나다> 내에서 벌채를 승인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조항은 무엇입니까?

### 공유림의 경우

공유림 내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산업자는 주 정부 혹은 준주 정부로부터 받은 일정 형태의 산림 보장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산림 보장권의 명칭은 주마다 다르지만, 산림 보장권이라 함은 특정 기업에게 특정 지역 (예: 산림 관리 구역) 내에서 명시적 규칙에 따라 목재를 벌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 면허증 혹은 허가증을 일컫습니다. 이러한 합의서는 정부, 개인 사용자 혹은 보장권 소유주의 의무와 책임을 정의하며, 각 관할 지역별로 다양합니다. 관할 지역들은 대부분 다양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종류의 산림 보장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드시 목재가 벌채되기 이전, 산림 관리 계획을 승인하고 벌채권 (harvest authorities)을 발행해야 합니다. 승인된 계획 및 벌채허가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벌채 권한의 정지, 벌금, 목재 압수 및 징역형 등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캐나다에서는 공유림 벌채의 대부분이 민간 임산기업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해당 기업은 산림 관리 계획 수립, 이해 당사자간 협의 도출, 진행 중인 작업 및 보고에 대한 윤리적, 법적 책임을 갖습니다. 주와 준 주의 산림 관리 주무 부처는 기업들이 모든 법과 규제를 지키고 특정 규약을 준수하는지 감시합니다.

### 사유림의 경우

일부 주에는 사유림 관리 관행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사유림에서 벌채된 목재의 이력을 추적하는 규제 제도를 통해 사유림과 공유림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유림의 경우 로열티를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제도에는 목재 검량, 표식 및 운반에 관한 규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유림을 대상으로 하는 임업은 시 정부의 규제를 받으며, 주 정부의 지침이나 자발적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습니다.

사유림 무단 침입이나 사유림 내의 목재 절도 등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사유림 소유주는 재산권 관련 법률에 의존하지만, 위법행위가 벌어진 이후에나 취해질 법한 법적 조치 이외에도,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 벌채 금지 지역 및 수종 포함

특정 지역의 경우 벌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지정된 경계선으로 구분되어 법적/정책적으로 보호되는 지역이거나 경영림 내에서 ‘벌채 불가’로 지정된 지역<sup>2)</sup>입니다.

2,400만 ha (7%) 이상의 산림이 보호림입니다. 보호림의 75% 이상은 엄격한 보호를 받으며, 자원 채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캐나다는 멸종위기에 처한 수종의 벌채 및 교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호림 내의 어떠한 수종에 대한 고의적 벌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제림 내의 어떠한 수종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sup>3)</sup>의 부속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어떠한 수종도 캐나다의 ‘멸종위기종보호법’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주 정부 또는 준주 정부의 경우, 해당 주 혹은 준주의 토착 경제수종 중 희귀한 수종의 보호와 관련된 법이 존재하지만, 정부가 승인한 산림관리계획에 따르면, 해당 수종의 벌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 <캐나다> 내에서 산림의 소유권 및 형태별 벌채를 하기 위한 절차와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캐나다의 경우, 벌채의 절차 및 요구사항은 소유권에 따라 다릅니다.

---

2) 별도 구분된 지역에는 수로 완충지대, 역사나 문화적으로 중요한 장소,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및 중요 야생동식물 서식지가 있습니다.

3)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은 지나친 상업적 채취로 인해 멸종될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동식물종의 이동을 제한합니다. 해당 협약의 부속서에는 필요한 보호 수준별로 동식물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공유재산

산림 관리에 대한 결정은 일련의 법, 규제, 매뉴얼 및 지침을 통해 개별 주 정부 및 준주 정부가 내립니다. 결정사항에는 산림관리계획, 산림에 대한 면허/인가를 받은 자의 권리 및 의무, 벌채된 지역의 재건, 야생동식물 서식지 및 수로 보호, 의무 보고 및 계획수립 절차, 목재 벌채에 대한 로열티 지급 (입목 및 기타 벌채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공유림에 대한 관리 목적을 설정하는 공공 절차를 포함하며, 토지 사용계획, 산림 관리, 공공협의, 지역의 이해관계, 보호 지역, 생물 다양성 보존, 도로 건설, 목재 벌채 면허 및 벌채면적할당, 환경 평가 및 멸종위기종에 관한 것입니다.

캐나다의 산림관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www.sfmcanada.org/en/forest-products/legal-forest-products#Prov>를 참고하십시오.

## 사유재산

사유림의 관리는 주로 주 정부 및 시 정부의 규제 및 지침을 따릅니다. 다수의 사유림 소유주는 산림관리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사유림 소유주의 책무 및 벌채 행위에 관한 지침이 되는 정부의 활동에 참여합니다.

사유림 내에서의 상업적 벌채가 다소 흔한 주의 경우, 사유림의 벌채를 규제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는 ‘사유림 보호법(Private Managed Forest Land Act)’ 이 있으며, 뉴브런즈윅주(New Brunswick)는 사유 식림지 내의 산림 자원의 개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천연물 보호법(Natural Products Act)’ 이 있습니다. 노바 스코셔주(Nova Scotia)의 ‘산림 보호법(Forests Act)’ 및 관련 규제는 공유림과 사유림 모두에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사유림에서 벌채된 목재의 이력을 추적하는 규제 제도를 통해 사유림과 공유림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유림의 경우 로열티를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제도에는 목재 검량, 표식 및 운반에 관한 규제가 있습니다. 사유림 벌채에 관한 특정 법령이 없는 주에서는, 사유재산에 대한 무단 침입이나 목재 절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법을 따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유림 벌채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환경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사유림 관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캐나다산림장관협의회(Canadian Council of Forest Ministers)의 웹사이트 <https://www.sfmcanada.org/en/forest-products/legal-forest-products#Prov>에 게시된 팩트시트를 참고하십시오.

-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가 있습니까?

캐나다는 불법 벌채를 금지하고 합법 벌채를 보장하기 위하여 삼림 통제에 관한 광범위하고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수료/로열티의 청구를 위해, 일단 원목 검량이 실시 되고 나면, 즉, 벌채된 목재 및 목재 제품의 부피 및 등급이 측정되고 나면, 정부는 더 이상 합법성 평가의 목적을 위해 목재의 섬유질에서부터 목재 제품까지의 이력을 추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섬유질이 벌채 시점에 합법적으로 획득되었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법규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기 위한 조항 및 필요 시 법규 불이행에 대한 강제 집행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캐나다 내에서의 목재 벌채 및 목재 제품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증거는 해당 목재가 속한 관할 지역 내의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제와 관련 검증 및 집행 체제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도출됩니다.

#### -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각 관할 구역은 공유림에서 작업하는 기업들을 면밀하게 감시하며, 해당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공식적으로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와 더불어, 각 주 정부 및 준주 정부는 각 주 및 준주에서 벌채된 목재의 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견제 및 통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집행기관은 주기적으로 법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나 증거가 있을 경우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경고장 발부 및 범칙금, 벌금형 혹은 기타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반 수준이 가장 심각한 경우 기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산기업이 승인된 산림 관리 계획을 준수하지 않거나, 벌채 인허가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벌금형 혹은 벌채권의 중지, 목재 압수 혹은 징역형 등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발행 문서의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각 주 정부가 발행된 문서의 진위 여부 검증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 및 문서화를 포함한 법 준수를 위해, 각 주 정부는 범법행위나 기타 부적절한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감시/감독 절차를 사용합니다.

- 담당 부처 또는 기관은 어디이며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연방정부에는 벌채 허가서를 발행하거나 벌채의 합법성 여부를 보증하는 부처 혹은 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 주 정부 혹은 준주 정부가 벌채허가서를 발행하거나 해당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벌채의 합법성 여부를 보증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각 주 정부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British Columbia**

Deputy Minister

Ministry of Forests, Lands, Natural Resource Operations and Rural Development

Telephone: +1-250- 952-6500

Natural Resource Enforcement website:

<https://www2.gov.bc.ca/gov/content/environment/natural-resource-stewardship/natural-resource-law-enforcement/natural-resource-officers/enforcement-actions>

**Alberta**

Executive Director

Alberta Agriculture and Forestry, Forest Management Branch

9920 - 108 Street, Edmonton, Alberta T5K 2M4 Canada

Telephone: +1-780-427-5324

**Saskatchewan**

Government of Saskatchewan

Forest Service Branch, Ministry of Environment

Box 3003, Prince Albert S6V 6G1 Canada

Email: skfs@gov.sk.ca

## **Manitoba**

Manager, Planning and Development

Forestry and Peatlands Branch

Manitoba Sustainable Development

200 Saulteaux Crescent, Winnipeg, Manitoba R3J 3W3 Canada

Telephone: +1-204 803-6639

## **Ontario**

Divisional Integration Co-ordinator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Forestry

Information Centre (NRIC)

300 Water Street, Peterborough, Ontario K9J 8M5 Canada

Telephone: +1-705-755-3188

## **Québec**

Director, Direction de la coordination opérationnelle

Ministère des Forêts, de la Faune et des Parcs

1300, rue Blizzard, - Local 300 Québec, Québec G2K 0G9 Canada

Telephone: +1-418 627-8656, poste 4480

## **New Brunswick**

Forest Management (Branch), Department of Energy and Resource Development

Hugh John Flemming Forestry Centre

P. O. Box 6000, Fredericton, NB, E3B 5H1 Canada

Telephone: +1-506-453-3826

Email: [dnr\\_mrnweb@gnb.ca](mailto:dnr_mrnweb@gnb.ca)

## **Nova Scotia**

<https://novascotia.ca/natr/forestry/contact.asp>

## **Newfoundland**

Fisheries and Land Resources

Forestry Regional Services

Fortis Building

4 Herald Avenue, P.O. Box 2006, Corner Brook, Newfoundland A2H 6J8 Canada

Telephone: +1-709-637-2517

[http://www.flr.gov.nl.ca/department/contact\\_forestry.html#lacd](http://www.flr.gov.nl.ca/department/contact_forestry.html#lacd)

## **Prince Edward Island**

Forests, Fish and Wildlife Division

J. Frank Gaudet Tree Nursery

183 Upton Road, Box 2000, Charlottetown, Prince Edward Island C1A 7N8  
Canada

Telephone: +1-902-368-6450

## Northwest Territories

Forest Resources, Forest Management Division

Department of Environment & Natural Resources

Government of the Northwest Territories

Telephone: +1-867-874-8228

## Yukon

Director

Forest Management Branch, Sustainable Resources Division

Energy, Mines & Resources, Government of Yukon

Telephone: +1-867-456-3813 [www.forestry.gov.yk.ca](http://www.forestry.gov.yk.ca)

## 국제 통용 인증 관련

- <캐나다>에서는 FSC, PEFC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위한 인증제도(FM or CoC)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 - 인증기관은 어디입니까?

캐나다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인증 프로그램이 세 개 있습니다. 캐나다 표준협회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CSA) 및 지속가능산림 이니셔티브 (Sustainable Forestry Initiative, SFI)는 국제산림인증연합프로그램 (PEFC)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국제산림관리협회(FSC)는 캐나다 내에 세 개의 역내 표준 (National Boreal, British Columbia 및 Maritime)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개 모두는 국제산림관리협회(FSC)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일부 목재 제품의 경우, 추가적인 산림제품연계관리(chain-of-custody)인증이 사용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certificationcanada.org/english/index.php](http://certificationcanada.org/english/index.php)를 참조하십시오.

### - 인증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캐나다의 산림은 국제산림인증연합 (PEFC) 인증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국제산림관리협회 (FSC)인증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캐나다는 전 세계 최대의 제3자 독립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1억 6,800만 ha 에 달하는 면적이며, 해당 면적에 대한 산림 관리는 캐나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세 개의 인증 프로그램 중 한 개 이상으로 인증됩니다. 임업이 발생할 수 있는 대다수의 산림에서의 임업 활동이 현재 인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9월 현재, 캐나다는 703개의 국제산림관리협회(FSC) CoC 인증 및 240개의 지속가능산림이니셔티브(SFI) 및 국제산림인증연합(PEFC) CoC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기 위한 사항

- <캐나다>에서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위한 자체적인 국가인 증제도 또는 민간 인증제도가 있습니까?
  -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인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문서는 무엇입니까?
  - 인증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인증제도별 산림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캐나다에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위한 자체적인 국가인증제도 또는 민간인증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불법 벌채에 대한 위험 무시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의해 인정 받았습니다.

- 스페인목재수입업자협회(AEIM)는 캐나다의 불법 벌채 수준이 매우 낮은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http://www.maderalegal.info/fichas>)
- NEPCon(Nature Economy and People Connected)의 ‘캐나다 불법벌채위험성 평가 보고서(Timber Legality Risk Assessment)’에는 2017년 캐나다 내의 불법 벌채 및 목재 운반을 통한 목재 공급 위험에 대한 분석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합법벌채점수(Timber Risk Score)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며, 불법 벌채 위험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http://beta.nepcon.org/sites/default/files/library/2017-08/NEPCon-TIMBER-Canada-Risk-Assessment-EN-V1.pdf>)
- 세계자원연구소(WRI)는 캐나다가 세계 최저수준의 불법 목재 공급 및 부정부패 기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http://www.wri.org/sites/default/files/wri\\_report\\_4c\\_report\\_legalityguide\\_final320.pdf](http://www.wri.org/sites/default/files/wri_report_4c_report_legalityguide_final320.pdf))
- 산림동향(Forests Trend)은 캐나다의 유럽연합에 대한 불법 목재공급위험이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했습니다. ([http://forest-trends.org/documents/files/doc\\_4085.pdf](http://forest-trends.org/documents/files/doc_4085.pdf))

-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위원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및 세계자원연구소(WRI)는 캐나다의 불법원목공급 및 부정부패가 세계최저수준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http://sustainableforestproducts.org/Legality>).
- Indufor는 유럽위원회 환경총국에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캐나다의 불법 벌채 위험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http://ec.europa.eu/environment/forests/pdf/ia\\_report.pdf](http://ec.europa.eu/environment/forests/pdf/ia_report.pdf)).

이와 더불어, 캐나다는 지속적으로 부정부패 사례가 매우 낮은 관할 지역으로의 순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s://www.transparency.org/>] 및 세계은행[<http://info.worldbank.org/governance/wgi/#home>] 지표를 참고하십시오.)

##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사항

- 상기의 사항을 제외하고 <캐나다>의 고유한 특성으로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또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어떤 운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제도 또는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산림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 <캐나다>의 합법성 증명제도 또는 시스템을 인정해주는 국가가 있습니까?

캐나다는 지역에 상관없이 불법 벌채의 위험이 지극히 낮기 때문에, 캐나다 관할 지역은 벌채의 합법성 증명을 위한 문서화 혹은 인증 절차 등의 별도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기타

- <캐나다>내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원목과 합법적으로 수입된 목재 및 목재 제품의 가공 및 수출을 위한 허가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 허가 혹은 규제하는 법의 구체적인 조항은 무엇입니까?
  - 합법적인 가공 및 수출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 합법적인 가공 및 수출 증명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캐나다는 법으로 활엽수(hardwoods)와 침엽수(softwoods)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 가공 및 수출

일부 주와 준주에는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가공에 관한 법률 또는 규제가 있으며, 목재 및 목재 제품의 합법적 가공을 위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주 및 준주별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sfmcanada.org/en/forest-products/legal-forest-products#Prov>

각 주 정부는 발행된 문서의 진위 여부 검증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 및 문서화를 포함한 법률 준수를 위해, 각 주 정부는 범법행위나 기타 부적절한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감시/감독 관행을 사용합니다.

캐나다의 목재 수출은 ‘수출입허가법 (Export and import Permits Act)’ 을 따릅니다. 캐나다 내의 모든 관할 지역에서 목재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로부터의 사전 수출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연방정부의 허가외 별도로, 특정 주와 준주의 경우, 목재 수출 시 주 내의 규제를 따라야 합니다.

### 수입

‘관세법 (Customs Act)’ 및 관련 규제에 따라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c-52.6/>), 캐나다로 수입되거나 캐나다를 통과하는 모든 물건은 첫 도착시점에 캐나다국경관리국 (CBSA)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http://www.cbsa-asfc.gc.ca/publications/dm-md/d3/d3-1-1-eng.html>). 목재 제품 등의 상품을 캐나다로 수입할 때, 수입업자 혹은 수입업자를 대신하는 관세사는 캐나다국경관리국(CBA)에 서면으로 반입목록을 제공하거나 웹사이트 (<http://www.cbsa-asfc.gc.ca/publications/dm-md/d17/d17-1-1-eng.html>)를 통해 반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캐나다국경관리국(CBA)으로부터 상품을 반입하기 위해, 반입 자료에는 모든 필수 증명서, 면허증, 허가증 및 기타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경관리국 직원은 수출입되는 모든 물건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출입되는 물건이 ‘관세법’ 또는 기타 의회법을 준수할 때까지 해당 물건을 억류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야생동식물 보호 및 국제, 지역 간 무역법 규제’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w-8.5/index.html>) 및 관련 규제(야생동식물교역규제) 에 따라 불법 벌채된 목재 및 목재 제품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국제, 지역 간 무역법 규제(WAPPRIITA)’ 의 6(1)관은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누구도 타국의 법률을 위반하여 획득된 동식물, 혹은 타국의 법률을 위반하여 소유, 유통 또는 운반된 동식물 혹은 동식물의 일부 및 파생물을 캐나다로 반입할 수 없다”*

또한 4(b)항은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6(1)관의 적용에 있어서, 식물이라 함은 생사 여부와 관계없이 식물계의 모든 야생종의 표본을 의미하며 동식물의 모든 종자, 포자, 꽃가루 또는 조직배양을 포함한다.”*

본 규제 및 관련 규제에 따라 타국의 법률을 위반하여 생산, 수출 또는 획득된 목재 제품의 캐나다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환경부(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는 ‘야생동식물 보호 및 국제, 지역 간 무역법 규제’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w-8.5/index.html>) 를 관리 및 시행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https://cites.org/>)에 의거한 종의 수입, 수출 및 주간 운송을 규제합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국제, 지역 간 무역법 규제 (WAPPRIITA)’ 는 캐나다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을 이행하고 동 협약에 미기재된 종의 불법 수입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캐나다 환경부는 캐나다국경관리국(CBSA)을 포함한 광범위한 파트너와 협력하여 캐나다로의 수입제품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및 해당 협약에 미 기재된 종에 대한 타국의 관련 법제를 준수하도록 합니다.

관리 당국으로서의 환경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해 규제되는 캐나다 발 혹은 캐나다 향 동식물 종의 국제 교역을 위한 요청을 검증 및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의 허가서나 인증서 발행을 통해, 표본들이 합법적으로 벌채되거나 캐나다로 반입되도록 합니다. 과학 당국으로서의 환경부는 종의 국제 교역이 해당 종의 생존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캐나다 내 야생동식물의 국제 교역을 감시하여 현재 수준의 교역이 지속가능하도록 합니다.

타국의 법을 위반하여 목재 제품이 캐나다로 반입되는 것이 확실하거나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제품의 수송이 관세 당국에 의해 저지됩니다. 만일 수입업자가 ‘야생동식물 보호 및 국제, 지역간 무역법 규제(WAPPRIITA)’를 위반했음이 의심될 경우, 환경부의 집행 부서는 해당 제품의 원산국의 집행 기관에 연락을 취해 목재 제품의 유입 및 교역에 관한 해당 국가의 법 또는 규제 및/또는 진술서에 대한 공식 문서를 요청합니다. 해당 정보는 추후 캐나다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목재 제품의 반입에 대한 합법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 Fitches, 집성재, 적층마루판, 합판, 가구 등 수입된 원자재와 국내 원자재를 혼합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수입 원자재와 국내 원자재의 함량 및 합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가 있습니까?

캐나다에는 수입 제품의 적발, 조사 및 압수를 위한 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법 벌채된 목재가 캐나다의 목재공급망에 투입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강력한 산림 관리 체계 및 불법 생산 혹은 획득된 목재 제품이 캐나다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하는 체계들이 캐나다 산 목재 제품의 불법 수출 위험을 낮춰줍니다.

- <캐나다>의 수출입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 공급망 이력 추적, 합법성 식별 등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민간 또는 비정부단체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제품의 이력추적과 관련하여, 구조적으로 등급이 책정되는 재료 (제재목 및 패널 등)의 생산자들은 구조물 각각에 등급 도장을 찍어 구조물의 압연 번호, 인증 기관, 종계, (제재목)의 원산지 및 구조물이 따르는 표준을 표시합니다.

등급 도장의 샘플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clsab.ca/about-clsab/more-information-lumber-grading/what-the-grade-marks-mean.aspx>

이러한 도장은 북미의 품질보증체계의 주요한 부분입니다. 캐나다 제재목 표준 인증 위원회 (CLSAB), 공학목재협회 (APA) 및 PFS-TECO 의 인증을 받은 기관 으로부터 도장을 받은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의 구매업자들은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 받습니다.